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42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11. 15.

발 의 자: 차인영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구성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28조, 제31조제1항 및 제2항